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2. 2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2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9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3. 2. 2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관 재

가. 제안이유

1998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02. 7. 3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직종·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기한이 2003. 2. 28일로 완료됨에 따라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불부합현원에 대한 경과기한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9. 9. 9 대통령령 제16550호) 부칙 제3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거 2003. 8. 31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하여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03. 2. 28일 현재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9명은 2003. 8.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함. (안 부칙 제3조제2항)

○ 직종·직급별 초과현원 : 39명

(단위 : 명)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소계	7	8	9	소계	7	8	9	10		
39	14	10	4	0	25	1	1	2	21	0	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2003. 2. 28일까지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 2. 28일에서 6월이 연장된 2003. 8.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동 조례 부칙 제3조제2항에 2003. 2. 28일까지 규정된 초과현원 49명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그 동안 10명이 자연 감소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39명(일반직:14명, 기능직:25명)에 대해서만 2003. 8.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연장된 경과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정원불부합현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2003. 8. 31일 이후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오윤수 위원) : 8월 31일까지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할 계획이 있는가?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일반직 공무원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해소할 것이며, 기능직은 자연감소, 결원직종으로 전직, 다른 직으로 전직, 공로연수 등의 방법으로 21명은 해소가 가능하며,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타구와 인사 교류에 의한 해소방법과 2004년 1월이면 공로연수 등의 방법으로

직권면직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지난번 49명에 대하여 연장하였는데 10명이 감소한 이유는?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2명 의원면직, 7명 정년퇴직, 1명 명예퇴직으로 자연 감소됨.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기능직 정년은?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일반적으로 57세이나, 방호원은 59세, 환경미화원은 60세 등 직종별로 차이가 있음.

○ 질의요지(남두희 위원) : 1회 연장이 6개월인가?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6개월로 규정된 것은 아님.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3.02.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1998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02년 7월 3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직종·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기한이 2003년 2월 28일로 완료됨에 따라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불부합현원에 대한 경과기한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9.9.9 대통령령 제16550호) 부칙 제3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거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하여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2003년 2월 28일 현재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9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함.(조례 제42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 부칙 제3조제2항)

■ 직종·직급별 초과현원 : 39명

(단위 : 명)

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직	고용직
	소계	7	8	9	소계	7	8	9	10		
39	14	10	4	0	25	1	1	2	21	0	0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2002.3.25 법률 제6669호) 제103조
-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2002.6.10 대통령령 제17624호)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령 부칙 제3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 (1)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9.9.9 대통령령 제16550호)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완료함.[행정자치부 자제12200-87('03.2.13)호 및 서울특별시 인사 12100-456('03.2.13)호]
- (2)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완료함.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 (1)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함.
-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42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중 “현원 49명은 2003년 2월 28일”을 “현원 39명은 2003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